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 2025.5.2 규정 제2327호 <시행일:2025.6.9.>]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 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26., 2013. 7. 3., 2014. 8. 27., 2016. 6. 8., 2019. 7. 10., 2020. 7. 22., 2022. 12. 7.>

- 1. "파생상품거래"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 2. "선물거래"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거래를 막하다.
 - 가. 당사자가 장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
 - 나. 당사자가 기초자산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가격이나 이자율, 지표, 단위 및 지수 등의 수치(이하 "수치"라 한다)와 장래의 특정 시점의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수치(이하 "최종결제가격"이라 한다)와의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현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 3. "옵션거래"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이하 "옵션"이라 한다)를 다른 쪽에게 부여하고, 그 다른쪽은 그 한쪽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 가. 기초자산의 매매거래
 - 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일의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수치(이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이라 한다)와의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현금을 수수하는 거래
 - 다. 제1항제2호가목의 선물거래
 - 라. 제1항제2호나목의 선물거래
- 4. "유가증권시장"이란 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중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 5. "코스닥시장"이란 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 중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 6. "회원"이란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서 파생상품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결제회원: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의 결제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거래의 결제를 자기의 명의로 하거나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거래에 따른 결제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로 하는 회원
 - 나. 매매전문회원: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의 매매전문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거래만 성립되고 거래에 따른 결제는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
 - 다. 지정결제회원: 매매전문회원이 거래에 따른 결제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결제회원
- 7. "투자중개업자"란 법 제12조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8. "투자매매업자"란 법 제12조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9. "기초자산"이란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의 대상물을 말하고,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하 "권리행사"라 한다)에 의하여 성립되는 거래의 대상물을 말한다.
- 10. "행사가격"이란 권리행사에 따라 성립되는 거래에서 사전에 설정된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수치를 말한다.
- 11. "콜옵션"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옵션을 말한다. <본호개정 2014. 8. 27>
 - 가.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제1항제3호가목의 옵션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물옵션거래(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옵션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권리행사에 의하여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의 매수로 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옵션

- 나.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제1항제3호나목의 옵션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권리행사에 의하여 행사가격이 권리행 사결제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금전을 수령하게 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옵션
- 12. "풋옵션"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옵션을 말한다. <본호개정 2014. 8. 27>
 - 가.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 및 선물옵션거래의 경우: 권리행사에 의하여 행사가격으로 기초자산의 매도로 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옵션
 - 나.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 권리행사에 의하여 행사가격이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그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금전을 수령하게 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옵션
- 13. "종목"이란 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최종거래일·최종결제방법 및 거래승수 등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하고,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콜옵션과 풋옵션·행사가격·최종거래일·거래승수 및 권리행사의 유형(최종거래일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과 최종거래일 이전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
- 14. "선물스프레드거래"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
 - 가.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경우: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같은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동일한 수량으로 한쪽 종목의 매도와 다른 쪽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해당 2개 종목의 가격 차이(이하 "선물스프레드"라 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
 - 나.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경우: 기초자산이 다른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한쪽 종목의 매도와 다른 쪽 종목의 매수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해당 2개 종목의 선물스프레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거래
- 15. "호가"란 거래소의 회원이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의 의사표시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본호개정 2014. 8. 27>
 - 가. 지정가호가: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
 - 나. 시장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호가로서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에서 각각 호가한 것으로 보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
 - 다. 조건부지정가호가: 제73조제1항제3호의 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 가호가
 - 라. 최유리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 거래를 하려는 호가
- 16. "주문"이란 위탁자가 거래를 위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하는 매도의 의사표시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본호개정 2014. 8. 27>
 - 가. 지정가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으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주문
 - 나. 시장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으로서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2항에서 각각 호가한 것으로 보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주문
 - 다. 조건부지정가주문: 제73조제1항제3호의 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 정가주문
- 라. 최유리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제1항제15호라목에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주문 17. "자기거래"란 회원이 자기의 명의 및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18. "위탁거래"란 회원이 해당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는 거래를 말한다.
- 19. "최근월종목"이란 결제월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
- 20.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이란 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거래의 체결 및 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스템(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거래의 체결 등을 위하여 계약으로 제3자로부터 시스템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21.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이란 회원이 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22. "직전약정가격"이란 해당 거래일의 각 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제63조 및 제63조의3에 따라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는 해당 종목의 약정가격을 제외하며, 해당 거래일 중 체결된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 및 정규거래시간 개시시점의 직전약정가격은 제70조제2항의 기준가격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5. 2.>
- 23. "장종료"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규거래시간(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정규거래시간은 제외한다)이 종료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5. 5. 2.>

- 24. "알고리즘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 를 말한다.
- 25.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거래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 가.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통제하는 전용 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주문의 생성·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을 이용할 것
 - 나. 제1호의 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의 회원전 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이하 "회원전산센터등"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 26.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156조의4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수치는 가격으로 본다. <개정 2014. 8. 27.>
- ③ 현금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제1항제2호나목의 선물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매도는 최종결제가격이 약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금전을 수령하고,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금전을 지급하는 당사자로 되는 거래로 한다. <개 정 2014. 8. 27.>
- ④ 현금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에서 매수는 최종결제가격이 약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금전을 수령하고,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로부터 산출되는 금전을 지급하는 당사자로 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14. 8. 27.>
- ⑤ 이 규정에서 거래일은 당일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다음날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 전까지를 하나의 거래일로 본다. <개정 2014. 8. 27.,2025. 5. 2.>
- ⑥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그 밖에 거래소의 업무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5. 2.>

제2장 시장의 구분 및 개폐

- 제3조(시장의 구분) ① 시장은 주식상품시장, 금리상품시장, 통화상품시장, 일반상품시장, 선물스프레드시장 및 플렉스시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3. 4.>
- ② 제1항의 각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2. 8., 2019. 7. 10., 2021. 11. 24.>
 - 1. 주식상품시장의 경우: 국내지수선물시장, 섹터지수선물시장, 해외지수선물시장, 국내지수옵션시장, 변동성지수선물시장, 국내주 식선물시장, 해외주식선물시장, 국내주식옵션시장, ETF선물시장 및 ETF옵션시장
 - 2. 금리상품시장의 경우: 국채선물시장 및 단기금리선물시장
 - 3. 통화상품시장의 경우: 통화선물시장 및 통화옵션시장
 - 4. 일반상품시장의 경우: 금선물시장 및 돈육선물시장
 - 5. 선물스프레드시장의 경우: 국내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시장, 변동성지수선물 스프레드시장, 국내주식선물스프레드시장, 해외주식선물스프레드시장, ETF선물스프레드시장, 국채선물스프레드시장, 단기금리 선물스프레드시장, 통화선물스프레드시장, 금선물스프레드시장, 돈육선물스프레드시장 및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시장
 - 6. 플렉스시장의 경우: 플렉스선물시장
- ③ 제2항 각 호의 시장의 세부 시장은 기초자산, 거래승수, 거래유형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2. 8.>

제4조(거래시간) ① 시장의 거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7. 5.,2025. 5. 2.>

- 1. 정규거래시간 : 당일 8시 45분부터 당일 15시 45분까지. 다만, 기초자산의 특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 2. 야간거래시간 : 전일 18시부터 당일 6시까지. 이 경우 야간거래시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기초자산의 특성, 거래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 5.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결제방법, 최종결제가격의 산출방법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 ③ 삭제 <2025. 5. 2.>

- ④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3. 4., 2009. 3. 18., 2015. 10. 21., 2017. 2. 8., 2025. 5. 2.>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2. 주식시장(유가증권시장 중 주식시장과 코스닥시장 중 주식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KRX금시장(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거래시간 등 기초자산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 3.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 4. 플렉스선물시장의 경우에는 플렉스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선물시장의 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 5. 야간거래시간의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25. 5. 2.>
 - 6.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5. 2.>

제4조의2(글로벌거래시간)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 제5조(휴장일) ① 거래소는 정규거래 또는 야간거래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휴장일로 하여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거래의 개시시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의 개시시점 을 기준으로 하다. <한신설 2009. 9. 23,개정 2025. 5. 2.>
 -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3. 토요일
 - 4.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날로 한다) <개정 2025. 5. 2.>
 - 5.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주가지수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의 휴장일
 - 6. 돈육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라 한다)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 준」에서 정한 축산부류도매시장 및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과반수가 휴장하는 날
 - 7. 기초자산이 변동성지수인 경우에는 변동성지수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옵션시장의 휴장일
 - 8.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제1항에 따른 휴장일 중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등 일부 상품시장만을 휴장하는 날에는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회원과 위탁자 간에 결제금액 및 증거금액을 수수한다. <개정 2010. 6. 23., 2011. 1. 26., 2014. 8. 27.>
-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 거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임시로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을 재개한다.
- 제7조(거래의 중개) 회원 간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중개업무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4. 8. 27.>
- 제8조(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의한 거래계약의 체결) 회원 간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 제8조의2(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2. 12. 7.>) ① 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거래소 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2022. 12. 7.>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개정 2022. 12. 7.>
- ③ 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제2편 상장상품

제1장 총칙

제9조(결제월거래) ① 파생상품거래는 결제월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이하 "결제월거래"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파생상품거래는 최초로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결제월거래의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을 새로운 결제월거래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 ③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일, 거래기간 또는 거래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 제9조의2(호가수량단위 및 거래수량단위 등) ① 파생상품거래의 호가수량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계약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거래수량단위(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최소단위의 계약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거래의 편의성, 시장의 유동성 및 1계약 금액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 ② 파생상품거래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8. 27.]

제2장 주식상품거래

제1절 주가지수선물거래

- **제10조(기초자산)**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가지수로 한다. <개정 2015. 6. 24., 2015. 10. 21., 2016. 6. 8., 2017. 2. 8.>
 - 1. 국내지수선물거래의 경우: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국내주가지수로서 해당 지수의 대표 성 및 상품성,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 2. 삭제 <2017. 2. 8.>
 - 3.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섹터지수(주식시장 상장주권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구성종목과의 가격상관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본호신설 2014. 8.27.>
 - 가.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 나,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일 것
 - 다. 구성종목이 10종목 이상일 것. 다만, 산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종목이 5종목 이상일 것
 - 4.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주가지수로서 해당 지수의 대표성 및 상품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
 - 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일 것
 - 나. 해외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산출할 것
 - 다. 외국거래소(법 제4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 라. 해당 지수 또는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와 그 지수의 사용 또는 그 파생상품의 거래 등에 관하여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
- ② 삭제 <2014. 8. 27.>
- ③ 삭제 <2014. 8. 27.>

[전문개정]

- 제11조(결제월 등) ①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 ② 삭제 <2017. 2. 8.>

-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지수선물거래의 새로운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은 해외파생상품시장의 거래개시일 및 거래시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6.8.>
- 제12조(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가지수별 지수의 수준,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 비용,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13조(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 제14조(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거래일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미결제약정수 량(이하 "최종결제수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 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주가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제2절 주가지수옵션거래

- 제15조(기초자산)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국내주가지수로서 해당 지수의 대표성 및 상품성,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17. 2. 8.>
- ② 삭제 <2014. 8. 27.>
- ③ 삭제 <2014. 8. 27.>

[전문개정]

- 제16조(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①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 ② 제9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결제월거래와 별도로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 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주의 특정한 거래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거래의 거래개시일 및 거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7. 10.>
- ③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각 거래개시일에 설정하고,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2019. 7. 10.>
- ④ 제3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 및 설정방법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2017. 2. 8., 2019. 7. 10.>
 [전문개정]

제17조(행사가격) ① 삭제 <2014. 8. 27.>

제18조(권리행사의 유형) ① 삭제 <2014. 8. 27.>

제19조(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는 주가지수별 지수의 수준,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 비용,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20조(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 제21조(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수량 및 배정수량(이하 "권리행사결제수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행사가격과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권리행사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주가지수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의 유형, 권리행사에 대한 결제일(이하 "권리행사결제일"이라 한다)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 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제3절 변동성지수선물거래<신설 2014. 8. 27.>

제21조의2(기초자산)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거래소가 산출하는 미래 일정 기간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변동성지수로 한다. <개정 2017. 2. 8.>

[본조신설 2014. 8. 27.]

제21조의3(결제월 등)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21조의4(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 제21조의5(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8. 27.]

제4절 주식선물거래<개정 2014. 8. 27.>

- 제22조(기초자산) ① 주식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이하 "기초주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 6.8>
 - 1. 기초자산이 국내 주권인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식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
 - 2. 기초자산이 해외 주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주권 중에서 상품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
 - 가.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일 것
 -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권일 것
 - 다. 해당 해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와 그 파생상품의 거래 등에 관하여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
- ② 제1항제1호의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재무상태, 그 밖에 기초주권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8.>

제23조(거래수량단위 및 거래승수 등) ① 삭제 <2014. 8. 27.>

제24조(결제월 등)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 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25조(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① 주식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기초주권별 가격의 수준, 기초주권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신설 2014. 8. 27., 2016. 6. 8., 2017. 2. 8.>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당락, 권리락,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등(이하 "배당락등"이라 한다)으로 기초주권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기초주권이 1의 정수배로 분할되어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결제월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2017. 2. 8.>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 ④ 주식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전문개정]

제26조(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 **제27조(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주식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 2014. 8. 27.>

제5절 주식옵션거래<개정 2014. 8. 27.>

- 제28조(기초자산) ① 주식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식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기초주권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주권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 27.>

제29조(거래수량단위 및 거래승수 등) ① 삭제 <2014. 8. 27.>

- 제30조(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① 주식옵션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 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 ② 주식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고,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 ③ 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와 설정방법 및 그 밖에 행사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2017. 2. 8.>

제31조(행사가격) ① 삭제 <2014. 8. 27.>

제32조(행사가격의 조정 등) ① 삭제 <2014. 8. 27.>

제33조(행사가격의 특별설정) ① 삭제 <2014. 8. 27.>

- 제35조(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① 주식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기초주권별 가격의 수준, 기초주권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7., 2017. 2. 8.>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당락등으로 기초주권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기초주권이 1의 정수배로 분할되어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2017. 2. 8.>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조정 전 승수를 1계약으로 하는 행사가격의 설정을 한다. <신설 2014. 8. 27., 2017. 2. 8.>
- ⑤ 주식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전문개정]

제36조(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 **제37조(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주식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처금 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주식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의 유형,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제6절 ETF선물거래<신설 2017. 2. 8.>

제37조의2(기초자산) ETF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9조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펀 드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ETF로 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제37조의3(결제월 등) ETF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 제37조의4(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① ETF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ETF별 가격의 수준, ETF와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배락 등으로 ETF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분배락 등으로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ETF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 **제37조의5(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제7절 ETF옵션거래<신설 2017. 2. 8.>

제37조의6(기초자산) ETF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 중에서 유동성, 안정성, 시가총액, 거래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 칙으로 정하는 ETF로 한다.

[본조신설 2017. 2. 8.]

- 제37조의7(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① ETF옵션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 ② ETF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고,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와 설정방법 및 그 밖에 행사가격의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 **제37조의8(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등**) ① ETF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ETF별 가격의 수준, ETF와 연계거래의 편의성 및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로 한다.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배락 등으로 ETF의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한다. 다만, 분배락 등으로 조정하려는 승수가 제1항에 따른 거래승수의 정수배가 되는 경우, 미결제약정이 없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계약 금액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거래승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거래승수와 구분하여 조정 전 승수를 1계약으로 하는 행사가격의 설정을 한다.
- ⑤ ETF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 제37조의9(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ETF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 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ETF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의 유형,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8.]

제3장 금리상품선물거래

제1절 국채선물거래<신설 2021. 11. 24.>

- 제38조(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국채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국고채권 중 일정한 잔존기간별 금리 대표성, 유동성, 거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국고채권표준물로 한다. <개정 2017. 2. 8.>
- ② 국채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상품의 특성,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0. 9. 1., 2011. 1. 26., 2014. 8. 27., 2017. 2. 8.>
- ③ 삭제 <2014. 8. 27.>
- ④ 삭제 <2014. 8. 27.>

[전문개정]

제39조(결제월 등)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 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40조(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국채선물거래의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41조(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 제42조(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9. 1., 2017. 2. 8.>
- ② 국채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1, 2011. 1. 26., 2014. 8. 27., 2017. 2. 8.>
- ③ 삭제 <2014. 8. 27.>
- ④ 삭제 <2014. 8. 27.>
- ⑤ 삭제 <2011. 1. 26.>

[전문개정]

제43조(국채 및 최종결제대금의 수수) ① 삭제 <2010. 9. 1.>

제2절 단기금리선물거래<신설 2021. 11. 24.>

- 제43조의2(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단기금리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금융계약 상의 채권·채무 가액의 결정, 금융상품 거래 가격의 산정 등에 사용가능한 만기 1년 이내의 금리 중 대표성, 신뢰성,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금리로 한다.
- ② 단기금리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상품의 특성,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4.]
- 제43조의3(결제월 등) 단기금리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4.]

제43조의4(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단기금리선물거래의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4.]

- 제43조의5(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단기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단기금리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1. 24.]

제4장 통화상품거래

제1절 통화선물거래

- 제44조(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통화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 중 유동성,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성, 거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통화로 한다. <개정 2015. 6, 24, 2017. 2, 8,>
- ② 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상품의 특성,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7. 2. 8.>
- ③ 삭제 <2014. 8. 27.>
- ④ 삭제 <2014. 8. 27.>

[전문개정]

제45조(결제월 등) 통화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 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46조(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통화선물거래의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47조(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 제48조(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최종결제대금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 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 ③ 제1항에 따른 통화의 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제2절 통화옵션거래

- 제49조(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통화옵션거래의 기초자산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외국통화 중 유동성, 국제금융시장의 대표성, 거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외국통화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7. 2. 8.>
- ② 통화옵션거래의 거래단위는 상품의 특성,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 신설 2014. 8. 27., 2017. 2. 8.>
- ③ 삭제 <2014. 8. 27.>

[전문개정]

- 제50조(결제월 및 행사가격 등) ① 통화옵션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 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 ② 통화옵션거래의 행사가격은 각 결제월의 거래개시일에 설정하고, 거래개시일의 다음 거래일 이후에는 행사가격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 ③ 제2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수 및 설정방법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2017. 2. 8.>

[전문개정]

제52조(권리행사의 유형) ① 삭제 <2014. 8. 27.>

제53조(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통화옵션거래의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54조(최종거래일 및 권리행사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 제55조(권리행사 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통화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처금 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7. 3.>
- ②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거래일, 권리행사의 유형, 권리행사결제일 및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 2014. 8. 27.>

제5장 일반상품선물거래

제56조(기초자산 및 거래단위) ①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초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1 >

- 1. 금선물거래의 경우: 금지금(「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 2.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돈육대표가격(품질평가원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 따라 공표하는 일별 대표가격으로서 공표일 직전 2일간 축산물도매시장에서 형성된 돈육도체별 경락가격의 합계액을 도체중량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돈육의 1킬로그램당 평균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항개정 2014. 8. 27.>
- ②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상품의 특성,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8.>
- ③ 삭제 <2014. 8. 27.>
- ④ 삭제 <2014. 8. 27.>

[전문개정]

제57조(결제월 등)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결제월, 결제월의 수 및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상품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기초자산 및 다른 상품과 연계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58조(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 일반상품선물거래의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59조(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제60조(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치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1.>

1. 삭제 <2015. 10. 21.>

2. 삭제 <2015. 10. 21.>

- ②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최종결제대금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23, 2014. 6, 3, 2014. 8, 27.>
- ③ 삭제 <2014. 8. 27.>

[전문개정]

제61조(금괴의 수수) ① 삭제 <2015. 10. 21.>

제6장 선물스프레드거래

- 제62조(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개정 2019. 7. 10.>) ①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거래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2개의 종목 간 선물스프레드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4. 8. 27., 2019. 7. 10.>
- ② 종목간스프레드거래에서 가격은 원월종목(최종거래일이 나중에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에서 근월종목(최종거래일이 먼저 도래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근월종목의 가격에서 원월종목의 가격을 뺀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9. 7. 10.>
- ③ 종목간스프레드거래에서 매도는 근월종목의 매수 및 원월종목의 매도를 하는 거래로 한다.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근월종목의 매도 및 원월종목의 매수를 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9. 7. 10.>
- ④ 종목간스프레드거래에서 매수는 근월종목의 매도 및 원월종목의 매수를 하는 거래로 한다. 다만, 금리상품의 경우에는 근월종목의 매수 및 원월종목의 매도를 하는 거래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9. 7. 10.>
- ⑤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7., 2019. 7. 10.>
- 제63조(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종목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체결된 수량과 동일한 수량으로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거래의 근월종목과 원월종목의 결제월거래가 동시에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7.>
- **제63조의2(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 등)** ①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은 기초자산이 다른 선물거래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2개의 종목 간 선물스프레드별로 구분한다.
- ②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 매수·매도의 구분 방법,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 등은 거래 비용, 거래 편의,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63조의3(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등) 상품간스프레드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선물 거래가 세칙으로 정하는 약정가격 및 수량으로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7. 10.]

제64조(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① 삭제 <2019. 7. 10.>

제7장 플렉스선물거래<신설 2009. 3. 4., 2017. 2. 8.>

제64조의2(비결제월거래)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매 거래일별로 거래를 구분한다. <개정 2017. 2. 8.>

- ②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제75조의4에 따라 특정한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방법으로 하는 플렉스협의거래가 최초로 신청되는 날을 새로운 종목의 거래개시일로 한다. <개정 2017. 2. 8.>
- ③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본조신설 2009. 3. 4.]

- **제64조의3(기초자산, 거래단위 및 거래승수 등)** ① 플렉스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은 시장에 상장된 파생상품 중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 칙으로 정한다.
- ② 플렉스선물거래의 거래단위, 거래승수, 호가가격단위 및 가격의 표시방법은 거래 비용, 1계약 금액의 수준, 거래의 유동성 및 가격형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2. 8.]

제64조의4(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① 삭제 <2014. 8. 27.>

- 제64조의5(최종결제방법,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 등) ① 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각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에서 제75조의 의4에 따라 플렉스협의거래의 당사자 간에 협의된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 1.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
 - 2. 현금을 수수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자산의 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2017, 2, 8,>
- ③ 플렉스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최종결제대금 및 최종결제가격은 상품의 특성, 거래의 편의성,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 최종결제가격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7., 2017. 2. 8.>
- ④ 삭제 <2014. 8. 27.>

[전문개정]

제3편 거래의 체결

제1장호가

제1절 호가의 방법 등

- **제65조(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① 회원이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여 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② 회원은 호가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기 전에 호가의 적합성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직접(법 제42조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2014. 8. 27.>
- ③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호가가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회원은 해당 호가를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2014. 8. 27.>
- ④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호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회원이 해당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단말기 중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과 연결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호가 적합성 점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27.>
- ⑤ 회원은 회원파생상품단말기의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 ⑥ 호가의 입력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6.>

제66조(호가접수시간) ① 호가는 호가접수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호가접수시간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67조(호가의 기록 및 통지) ① 거래소는 호가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호가의 내용을 거래소파생 상품시스템에 기록한다.
- ② 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즉시 해당 호가를 입력한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 ③ 거래소는 접수 또는 기록된 호가의 내용을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접수일 또는 기록일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4. 8. 27.>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화·접수 및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68조(호가의 효력)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시간 중 접수된 호가는 해당 거래시간 동안(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되는 때까지로 한다) 효력을 지속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3., 2014. 8. 27.,2025. 5. 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로서 제81조제1항의 거래소착오거래의 우려가 있는 때의 호가의 효력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할 수 있다.

제69조(호가의 취소 및 정정) ①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2. 7.>

② 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7.>

제2절 호가의 관리

- 제70조(호가의 가격제한) ① 호가의 가격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 거나 하한가(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27.>
- ② 제1항의 기준가격, 상한가, 하한가, 그 밖에 호가의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70조의2(호가의 실시간 가격제한) ① 제74조에 따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거래의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호가의 가격은 실시간상한가[직전약정가격에 가격변동폭을 더한 가격(그 가격이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고, 매도호가의 가격은 실시간하한가[직전약정가격에서 가격변동폭을 뺀 가격(그 가격이 하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하한가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5. 2.>
- ② 거래소는 약정가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 등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 ③ 제1항의 실시간상한가 실시간하한가를 적용하는 거래 및 종목, 가격변동폭, 그 밖에 실시간상한가 실시간하한가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호가수량한도(호가당 지정할 수 있는 수량의 최대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누적호가수량한도(파생상품계좌당 제출할 수 있는 미체결 호가수량 누계의 최대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호가의 수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

[전문개정 2014. 8. 27.]

제2장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1절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제72조(개별경쟁거래의 원칙) ① 거래는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 ② 개별경쟁거래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로 구분한다.
- ③ 개별경쟁거래에서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8. 27.>
 - 1.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 2. 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호가가 접수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다만, 상한가 및 하한가의 단일가호가 간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큰 수량의 호가가 적은 수량의 호가에 우선하고, 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제73조(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9. 23., 2014. 8. 27., 2015. 4. 29., 단서신설 2022. 12. 7., 2025. 5. 2.>

- 1. 정규거래시간 및 0 한가거래시간의 최초약정가격 <개정 2025. 5. 2.>
- 2.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 후의 최초약정가격
- 3. 정규거래시간 및 야간거래시간의 최종약정가격. <단서삭제 2022. 12. 7.,개정 2025. 5. 2.>
- 4. 기초주권이 정리매매종목(「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조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상장폐지 전에 매매거 래를 정지한 후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약정가격
- ② 제1항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호가(이하 "단일가호가"라 한다)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7.>
- ④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하는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제72조제3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최초약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단일가호가의 접수시간 중에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라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거래를 체결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4. 8. 27., 2015. 4. 29.>
 - 1. 합치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의 모든 수량 및 합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의 모든 수량
 - 2. 합치가격의 호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수량
 - 가.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한쪽 호가의 모든 수량
 - 나, 다른 쪽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쪽 호가의 거래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 ⑤ 제4항의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약정가격은 직전약정가격과 동일한 합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치가격으로 하고, 직전약정 가격과 동일한 합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약정가격에 가장 가까운 합치가격으로 한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치하는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이 경우 약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제74조(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 ① 제73조제1항 각 호 이외의 약정가격의 결정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에 의한 다. <개정 2014. 8. 27.>

- ②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호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7.>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의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상한가보다 높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상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의 시장가호가의 가격이 실시간하한가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실시간하한가의 지정가호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한다. 이경우 시장가호가의 전환·접수 및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6.3.>
- ④ 제1항에 따라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하여 제72조제3항의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래를 체결시킨다. <개정 2014. 8. 27.>

제2절 거래에 관한 계약체결의 특례<신설 2014. 8. 27.>

제75조(협의거래) ① 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협의된 조건으로 거래를 체결(이하 "협의거래"라 한다)할 수 있다.

- 1. 협의대량거래
- 2.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 3. 플렉스협의거래
- 4. 삭제 <2025. 5. 2.>
- ②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렉스선물거래는 협의거래로만 거래를 체결한다. <개정 2017. 2. 8.>
- ③ 이 규정에서 협의거래의 신청은 호가로 보며, 협의거래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협의거래는 제72조에 따른 경쟁거래와 별도로 호가의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 ⑤ 협의거래의 신청의 취소·정정, 제한, 그 밖에 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75조의2(협의대량거래) ① 제75조제1항제1호의 협의대량거래는 회원이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
 - 1. 삭제 <2014. 8. 27.> 2. 삭제 <2014. 8. 27.>
- ② 혐의대량거래의 신청은 해당 종목의 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③ 혐의대량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 ④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협의대량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4.>
- 제75조의3(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 ① 제75조제1항제2호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는 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을 최종거래일 이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선물거래의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회원이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고, 해당 미결제약정수량에 관한 기초자산과 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 ②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7. 2. 8.>
- ③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시간,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8. 27.>

[본조신설 2009. 3. 4.]

- 제75조의4(플렉스협의거래) ① 제75조제1항제3호의 플렉스협의거래는 회원이 플렉스선물거래에 대하여 최종거래일, 최종결제방법(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이 동일한 종목의 거래가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으로 한다),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거래의 체결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 ②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은 해당 종목의 거래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③ 플렉스협의거래의 가격은 상한가 및 하한가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 ④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플렉스협의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4.]

제75조의5(장개시전협의거래)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3. 18.]

- 제75조의6(미결제약정의 전환) ① 거래소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승수를 제외한 기초자산·최종거래일 등이 동일한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간에 미결제약정을 전환하는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
- ② 미결제약정의 전환의 신청수량, 신청내용, 신청방법, 신청시한,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21.]

제3절 거래의 중단<개정 2014. 8. 27.>

- **제76조(거래의 임의적 중단)**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종목의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3. 4., 2015. 10. 21., 2017. 2. 8.>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2. 주식시장의 시스템장애가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발생하여 주가지수의 구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수 이상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 3.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에 있어서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4. 선물스프레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에서 거래가 중단된 종목이 있는 경우

- 5. 돈육선물거래에 있어서 품질평가원이 「돈육 대표가격 관리기준」에서 정한 축산물도매시장의 과반수가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 6. 플렉스선물거래에 있어서 플렉스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선물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 7. 금선물거래에 있어서 KRX금시장의 매매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 8. ETF선물거래 및 ETF옵션거래에 있어서 ETF의 매매거래의 중단·정지,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9. 그 밖에 거래상확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거래를 중단 또는 정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 제77조(주식상품거래의 필요적 중단 등<개정 2015. 4. 29.>)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상품거래(주식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중단한다. <개정 2015. 4. 29.>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주식상품거래를 중단한 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즉시 중단된 주식상품거래를 재개한다. <개정 2015. 4. 29.>
- ③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5조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6조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를 종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식상품거래의 당일 정규거래를 종결한다. 이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의 야간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4. 29,,개정 2025. 5. 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양 시장 종목에 대하여 거래소가 산출한 주 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의 중단, 재개 및 종결은 해당 주가지수의 구성 비중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5.>

제78조(주가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 등의 필요적 중단) ① 삭제 <2015. 4. 29.>

제4절 회원에 대한 거래내용의 통지 등<개정 2014. 8. 27.>

- **제79조(거래내용의 통지)** ① 거래소는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내용을 회원에게 즉시 통지한다. <개정 2014. 8. 27.>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의 통지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 ③ 거래소는 제1항의 거래내용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거래의 성립일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4. 8. 27.>

제80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원은 거래소가 통지한 거래내용을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가 통지한 거래내용이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에 도달된 때에는 회원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① 거래소는 거래의 중개업무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호가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 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거래소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 1.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 2.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② 거래소는 회원이 주문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할 때에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회원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 ③ 제1항의 거래소착오거래, 제2항의 회원착오거래의 정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81조의2(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① 거래소는 회원 또는 위탁자의 착오로 인하여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거래 중 대량투자 자착오거래(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

- 하 같다)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황의 급변,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문개정 2014. 6. 3.. 본항개정 2014. 8. 27.>
- ② 제1항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 제81조의3(거래의 취소)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거래 취소의 방법, 그 밖에 거래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6. 3.]

- **제82조(시세 등의 공표)** ① 법시행령 제364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공표한다. <개정 2015. 4. 29.>
 - 1. 현재·최초·최고·최저 및 최종의 약정가격
 - 2. 약정수량 및 약정금액
 - 3. 미결제약정수량
 - 4. 직전 정규거래의 최종의 약정가격 또는 기준가격
 - 5. 단일가호가시간 이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우선가격의 호가수량,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호가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예상체결가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6.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거래소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5. 4. 29.>
- ③ 제1항의 예상체결가격의 공표기간 중 호가의 정정 및 취소의 제한, 시세 등의 공표방법 및 제2항의 투자참고사항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 29.>

제3장 글로벌거래의 특례[삭제 2025. 5. 2.]

제82조의2(적용범위)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82조의3(호가의 입력내용 및 방법) 삭제 <2025. 5. 2.>

제82조의4(호가접수시간 및 효력)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82조의5(호가의 취소 및 정정)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82조의6(호가의 가격제한)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82조의7(호가의 수량제한)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82조의8(거래의 체결방법) 삭제 <2025. 5. 2.>

제82조의9(거래의 임의적 중단)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82조의10(착오거래의 정정)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82조의11(시세 등의 공표)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82조의12(준용규정)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4장 시장조성자<개정 2014. 8. 27.>

- 제83조(시장조성자)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② 시장조성자가 되려는 자는 파생상품에 관한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및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 ③ 거래소는 시장조성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실적을 평가한 후 그 실적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의 범위에서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 ④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상품, 종목 및 기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장조성계약의 체결방법, 호가의 제출 시기·방법, 시장조성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기준, 그 밖에 시장조성 및 시장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4., 2010. 9. 1., 2011. 1. 26., 2012. 12. 12., 2014. 8. 27.>

[전문개정 2014. 8. 27.]

제84조(시장조성계약의 사전 체결) ① 삭제 <2014. 8. 27.>

제85조(시장조성호가의 제출시기 및 제출간격) ① 삭제 <2014. 8. 27.>

제86조(시장조성호가의 제출방법) ① 삭제 <2014. 8. 27.>

제87조(시장조성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 ① 삭제 <2014. 8. 27.>

제4편 거래의 청산 및 결제<개정 2009. 12. 29.>

제1장 거래증거금

제88조(거래증거금의 예탁 등) ① 결제회원은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계좌(이하 "파생상품계좌"라 한다)별로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과 해당 최대순손실상당액이 신용위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거래 종

료시점에 산출한 최대순손실상당액과 신용위험손실상당액 합산액이 직전 장종료 시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3., 2011. 7. 6., 2015. 12. 30., 2025. 5. 2.>

- ②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최대순손실상당액 이상의 금액으로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 증거금으로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 ③ 회원은 제1항의 거래증거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현금(「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를 말하고, 「수표법」에 따라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 ④ 제3항에 따른 외화 및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2.>
- 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되는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한다)을 회원의 재산과 회원이 아닌 자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산출 시점 이후 도래하는 정규거래시간 중 11시(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경우에는 11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까지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 ⑥ 거래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일, 예탁시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최대순손실상당액, 신용위험한도 및 신용위험손실상당액의 산출방법, 그 밖에 거래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0.>

제89조(대용증권) ① 제88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현금에 갈음하여 예탁할 수 있는 증권(이하 "대용증권"이라고 한다)의 종류 및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1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8.>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성,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용 증권에 대하여는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용증권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 ③ 거래소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예탁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별 및 종목별 금액의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8.>
- ④ 회원은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 회원증거금으로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이 회원 자기가 발행한 증권 및 관계회사가 발행한 증권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개정 2019. 7. 10.>
- ⑤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이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대용증권의 종류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제90조(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사용제한)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및 외화증권을 해당 거래전문회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2.>

제91조(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① 결제회원의 거래증거금의 예탁 및 인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 정 2019. 8. 28.>

- 1. 현금 또는 외화의 경우: 결제금액수수은행에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위하여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거래증거금의 수령을 위하여 해당 은행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 2. 대용증권의 경우
 - 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 나. 결제회원에 개설한 위탁자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결제회원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자증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전질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전질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 3. 외화증권의 경우: 외화증권의 거래증거금 예탁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해당 거래소 명의의 계좌에서 외화증권 수령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한다. <본항개정 2014. 8, 27.>
- ② 결제회원이 제1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을 예탁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8. 27.>

- ③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 및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 제92조(거래증거금 관리 및 운용) ① 거래소는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현금,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거래소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결제회 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12, 12, 12, >
- ②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예탁한 현금 또는 외화를 법시행령 제36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환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 ③ 거래소는 결제회원별로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받은 현금 또는 외화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12, 28,>
- ④ 제2항에 따른 거래증거금의 운용 및 제3항에 따른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8,>
- 제93조(거래증거금 등의 인출) ① 결제회원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 ② 매매전문회원은 제8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매매전문회원증거금을 예탁한 경우에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 제93조의2(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정규거래시간 중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 거래증거금(이하 "장 중추가증거금"이라 하고, 매매전문회원이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중추가증거금을 부과 받은 경우 결제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거래소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③ 제1항의 경우 매매전문회원은 장중추가증거금 이상에서 지정결제회원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으로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해당 지정결제회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④ 회원은 제1항의 장중추가증거금 및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을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장중추가증거금 산출·부과 및 예탁방법, 그 밖에 장중추가증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
- 제93조의3(장중추가증거금 부과해제) ① 거래소는 제9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의 변동 등으로 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거래소가 결제회원에 대한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는 경우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의 부과를 해제하여 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3.]

제2장 거래소와 회원 간 청산 및 결제<개정 2009. 12. 29.>

제1절 통칙

제94조(채무인수할 거래의 확인) 거래소는 거래의 성립후 회원의 채무를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수할 채무의 기초가 되는 거래를 확인한다. 이 경우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에 따른 거래의 정정, 구제 및 취소 등으로 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거래를 확인한다. <개정 2014. 8. 27.>

[본조신설 2009. 12. 29.]

제94조의2(면책적 채무인수) ① 거래소는 제94조에 따라 확인한 거래에 대하여 회원이 상대방인 회원에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7. 3., 2014. 8. 27.>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에 채무를 이전한 회원은 이전하기 전에 상대방인 회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한다. <개정 2009. 12. 29.>

[전문개정]

제95조(매도·매수 대등수량의 소멸) 거래소는 파생상품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직전 거래일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포함한다)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킨다. 다만,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5. 2.>

제2절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제96조(일일정산 및 정산가격) ① 거래소와 결제회원, 지정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은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2025. 5. 2.>
- ② 제1항의 정산가격은 각 종목별로 정규거래시간 중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선물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결제월거래의 약정가격과 협의거래의 약정가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약정가격이 없거나 약정가격이 기초 자산 가격의 일정 수준을 벗어나는 종목의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정산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 3. 4, 2009. 9. 23, 2014. 8. 27, 2015. 6. 24, 2017. 2. 8.>
- 제97조(당일차금의 수수) ① 결제회원은 해당 거래일의 약정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당일차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2025. 5. 2.>
- ② 매매전문회원은 당일차금을 지정결제회원과 수수하여야 한다.
- 제98조(갱신차금의 수수) ① 결제회원은 직전 거래일의 정산가격과 해당 거래일의 정산가격과의 차이에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의 미결제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갱신차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선물거래 기초주권의 배당락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차금을 산출한다
- ② 매매전문회원은 갱신차금을 지정결제회원과 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5. 2.]

제3절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제99조(옵션대금의 수수) ① 결제회원은 옵션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이하 "옵션대금"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수수하여야 한다.
- ② 매매전문회원은 옵션대금을 지정결제회원과 수수하여야 한다.
- 제100조(권리행사의 신고) ① 회원이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권리행사수량을 신고시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와 그 회원 이외의 자의 계산에 의한 거래의 구분
 - 2.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는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구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손실종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8. 27.>
 - 1. 콜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이 행사가격 이하인 종목
 - 2. 풋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이 행사가격 이상인 종목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이익종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단서삭제 2013. 7. 3.>
 - 1. 콜옵션에 있어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에서 행사가격을 뺀 수치가 세칙으로 정하는 수치(이하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라 한다) 이상인 종목

- 2. 풋옵션에 있어서 행사가격에서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을 뺀 수치가 권리행사신고의제수치 이상인 종목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매전문회원이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결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
- ⑤ 제1항의 신고시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방법, 제4항의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01조(권리행사의 배정) ① 거래소는 제100조에 따라 신고한 각 종목의 권리행사수량을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종목의 매도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무작위로 배정하되,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배정수량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 8. 27.>
- ② 매매전문회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 배정의 통지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02조(옵션의 소멸)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옵션으로서 거래종료 후에 권리행사 및 배정이 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으로 남아 있는 옵션은 권리행사의 배정이 이루어진 후에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

제4절 차감결제 및 결제시한 등

- 제103조(차감 및 차감결제현금·차감결제기초자산의 확정) ① 거래소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 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현금"이라 한다)를 거래소와 회원간 수수하는 현금으로 확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7. 3.>
- ② 거래소는 결제일 및 결제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이하 이 절에서 "차감 결제기초자산"이라 한다)을 거래소와 회원간에 수수하는 기초자산으로 확정한다. <개정 2009. 12. 29.>
- ③ 지정결제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확정된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며 해당 매매전문회원은 지정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한다. <개정 2009. 12. 29., 2014. 8. 27.>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결제일 및 결제시한은 다음 각 호의 날 및 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09. 12. 29.>
 - 1. 당일차금 및 갱신차금의 경우: 해당 차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6시
 - 2. 옵션대금의 경우: 옵션거래가 성립한 날의 다음 거래일의 16시
 - 3.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기초자산의 경우: 현금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최종결제일 또는 권리행사결제일의 16시,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최종결제일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 ⑤ 거래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또는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
- ⑥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 초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 제103조의2(결제내역의 통지) 거래소는 제103조에 따라 확정된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내역(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하여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본조신설 2009. 12. 29.]

- 제104조(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 ① 결제회원은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고, 거래소는 제105조의2에 따라 결제회원에게 지급 또는 인도한다. <개정 2009. 12. 29.>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1,, 2017. 2. 8.>
 - 1. 차감결제현금의 경우: 차감결제현금의 결제를 위하여 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와 결제회원 명의의 계좌간의 대체

- 2. 통화상품거래 중 통화선물거래 및 플렉스선물거래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경우: 제48조제3항 및 제64조의5제2항에 따른 방법 3. 삭제 <2015. 10. 21.>
- ③ 매매전문회원과 지정결제회원은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결제일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 1.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 이내에서 결제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간
 - 2. 매매전문회원이 결제회원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 이후에서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간
- ④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 제104조의2(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결제완결) 결제회원은 제104조에 따라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거래 소에 납부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6. 3.]

- 제104조의3(결제위험의 파악·관리 등) ① 결제회원은 원활한 결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 ③ 제1항의 통지내용 및 시기, 제2항의 결제회원의 결제에 관한 위험의 파악 및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29.]
- 제105조(결제이행보증을 위한 유동성공급 등)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제103조제4항의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제시한을 기준으로 지체 없이 결제이행재원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다만,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09, 12, 29, 단서개정 2014, 8, 27,>
- ② 거래소는 기초자산의 인도자인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대하여 기초자산의 인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기초자산의 인수자인 결제회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③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공급부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결제일에 형성되는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종결제대금보다 적은 경우에 거래소는 최종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본문개정 2009. 12. 29, 본항개정 2013. 7. 3, 본문개정 2014. 8. 27.>
- ④ 결제회원이 제3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결제회원은 자신을 지정결제회원으로 하는 매매전문회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 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을 매입하여 인도하거나 기초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 결제회원에게 통지한다. <신설 2009. 12. 29.>
- ⑥ 제1항의 결제이행재원의 종류 및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 제105조의2(결제지시) 거래소는 결제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감결제현금의 지급 또는 차 감결제기초자산의 인도의 지시(이하 "결제지시"라 한다)를 한다. 다만, 납부할 모든 결제회원이 결제시한 이전에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 감결제기초자산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납부가 완료된 때에 결제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 1. 차감결제현금의 경우: 결제은행
 - 2. 차감결제기초자산의 경우: 세칙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09. 12. 29.]

- 제105조의3(결제지연손해금) ① 결제시한까지 차감결제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회원은 결제지연손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변, 결제은행 전산시스템의 장애 그 밖에 결제시한까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14. 8. 27.>
- ② 제1항의 결제지연손해금의 산출 및 납부방법 그 밖에 결제지연손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12. 29.]

- 제106조(비용의 부담) 결제 또는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은행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손실은 결제회원이 부담한다. 이 경우 결제 회원은 매매전문회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비용과 손실에 대하여 해당 매매전문회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07조(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등) ①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결제(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를 말한다) 또는 거 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하 "결제불이행"이라 한다)에는 일정한 기 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09. 12. 29.※개정 2013. 7. 3., 2014. 8. 27.>
 - 1. 거래의 전부 또는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 등 일부의 정지
 - 2.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그 밖에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 3.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의 "결제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항개정 2009. 12. 29.※개정 2013. 7. 3.>
 - 1.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3.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경우
 - 4.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수행하는 국내지점인 경우 국외의 본점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상당하 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 6.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결제회원이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차감결제현금,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거래증거금·장중추가증거금 그 밖의 금전 또는 증권으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 개정 2009. 12. 29,, 2013. 7. 3.>
- ④ 거래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정지한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증권을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으로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금전으로 차감결제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2015. 2. 11.>
-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결제회원은 조치내용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29.>
- ⑥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해당 결제회원에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
- 제108조(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지정결제회원은 매매전문회원이 결제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 가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
 - 1.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매매전문회원 장중추가증거금 그 밖에 해당 매매전문회원이 결제 회원으로부터 수령할 금전 또는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정지
 - 2. 결제위탁수량의 제한
 - 3. 그 밖에 결제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조치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와 관련하여 지정결제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전문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제109조(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의 해소) ① 거래소는 제107조·제108조, 「회원관리규정」 제36조 및 「시장감시규정」 제22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회원(이하 "거래정지회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래정지회원

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해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9. 12. 29.※전단개정 2014. 8. 27.>

-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매수,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이하 "미결제약정의 정리"라 한다)
- 2. 다른 결제회원으로의 미결제약정의 인계(이하 "미결제약정의 인계"라 한다)
- ② 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이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약정을 제1항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에게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 ③ 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제1항의 방법으로 해소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에게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하게 하거나 거래소가 지정하는 다른 결제회원에게 미결제약정의 인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4. 8. 27.>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소의 지정에 의하여 미결제약정의 정리를 수행하는 다른 결제회원과 거래정지회원과의 사이에는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12. 29., >
- ⑤ 제3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려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거래정지회원과 거래소가 지정하는 결제회원 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4. 8. 27.>
- ⑥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결제회원은 조치내용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2. 29.>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정리방법, 제4항의 위임사무의 처리방법,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체결가격, 미결제약정과 관련한 위탁자 재산의 이전방법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정리 및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9.>
- 제109조의2(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① 거래소가 제107조제1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결제회원의 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거래소에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에 관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조치의 해지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의 조치를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2. 29.]

제5편 거래의 수탁

제1장 수탁의 조건

제1절 파생상품계좌의 설정 및 약관의 교부 등

- 제110조(파생상품계좌의 설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생상품계좌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4조제3호의 위탁자파악사항을 감안하여 위탁자가 거래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회원과 위탁자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위하여 파생상품계좌를 설정한다는 사항
 - 2. 위탁자는 시장에서의 거래의 수탁과 관련하여 회원이 사전에 정한 계약의 내용(이하 "파생상품거래약관"이라 한다)을 승인한다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위탁자가 추가로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약관 및 제113조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2.]

제110조의2(외국인 통합계좌의 설정) ① 회원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를 설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외국 금융투자업자 및 외국투자자, 제2항의 외국인 통합계좌의 신고, 증거금·결제금액·미결제약정 등 외국인 통합계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2.]

- 제110조의3(주문의 수탁방법등의 공표 및 설명) ① 회원은 주문의 수탁방법 및 처리방법, 그에 따른 이용조건 및 비용 등(이하 "주문의 수탁방법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 부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후단개정 2014. 8. 27.>
- ② 회원은 제1항의 주문의 수탁방법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적합한 주문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주문의 수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문의 수탁방법등의 세부내용과 그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6.]

- 제111조(약관의 기재사항) ① 회원은 거래에 관한 법령과 그 법령에 따른 명령, 거래소의 「회원관리규정」·「시장감시규정」·이 규정, 그 밖에 거래에 관한 규정(이하 "파생상품관계법규"라 한다)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생상품거래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 2015. 4. 29., 2017. 5. 2., 2022. 12. 7.>
 - 1. 파생상품관계법규 및 파생상품관계법규에 따른 조치의 준수에 관한 사항
 - 2. 수탁의 거부에 관한 사항
 - 3. 지정결제회원에 관한 사항
 - 4. 기본예탁금의 예탁에 관한 사항
 - 5. 위탁증거금의 예탁에 관한 사항
 - 6. 대용증권 및 외화증권의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7.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제137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또는 제137조의2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 8. 위탁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 9. 기초자산 수수의 제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10. 최종결제대금 및 기초자산의 사전예탁에 관한 사항
 - 11. 위탁자의 결제조건의 변경, 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1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통지 등 위탁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
 - 13. 제133조제4항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위탁자의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의 거부에 관한 사항
 - 14. 제156조의2제2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
 - 15. 제77조에 따른 주식상품거래의 종결에 관한 사항
 - 16. 제81조의2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에 관한 사항
 - 17. 제81조의3에 따른 거래의 취소에 관한 사항
 - 18. 외국인 통합계좌의 설정 및 관리,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주문·결제 등에 관한 사항
 - 19. 위탁자가 제156조의4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56조의4에 따른 등록의무에 관한 사항
 - 나. 수탁거부 등 그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 20. 그 밖에 위탁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원은 파생상품거래약관을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의 내용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거래약 관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파생상품거래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1. 12. 28. > 개정 2015. 4. 29. >

- ③ 거래소는 회원이 통지한 파생상품거래약관의 내용이 파생상품관계법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위탁자의 보호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거래약관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2조(약관의 중요내용의 설명 및 교부) 회원은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파생상품거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파생상품거래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3조(위험고지서의 교부 등) ① 회원이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라 한다)을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1. 위탁증거금 이상의 손실발생 가능성
 -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가능성
 - 3.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회원에 의한 미결제약정의 해소 및 위탁증거금 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의 처분 가능성
 - 4. 시장의 상황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인상 가능성
 - 5. 시장의 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른 거래의 체결 및 미결제약정의 해소 곤란성
 - 6. 그 밖에 위탁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하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라 한다)을 위탁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는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2025. 5. 2.>
- 제114조(위탁자관련사항의 기록 등) 회원은 위탁자와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1.>
 -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으로 한다),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납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번호 등 동일인을 인식할 수 있는 번호로 한다) 및 비밀번호
 - 2.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및 전화번호
 - 3. 다음 각 목의 위탁자파악사항
 - 가. 개인,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그 밖의 위탁자의 구분
 - 나. 위탁자의 투자목적
 - 다. 위탁자의 투자경험
 - 라. 위탁자의 자산 및 소득수준
 - 마. 위탁자의 신용상태
 - 바. 그 밖에 회원이 위탁자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14조의2(글로벌거래의 수탁) 삭제 <2025. 5. 2.>

[본조신설 2009. 9. 23.]

제115조(파생상품계좌설정약정서 등의 보관) 회원은 제110조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에 관한 서면, 제113조제2항의 파생상품거 래위험고지서 교부확인서 및 제114조에 따른 위탁자관련사항을 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15, 10, 21.>

제116조(회원의 선관의무 등)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수탁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6.>

-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거래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27.>
- ③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그 위탁받은 거래를 하기 전에 자기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계산으로써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27.>

제2절 수탁의 방법 및 조건

제117조(주문내용의 확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문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제118조(주문의 수탁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 1. 문서에 의한 방법
-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전화등방법"이라 한다)
-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1. 7. 6., 단서개정 2014. 8. 27., 개정 2022. 12. 7.>
- ③ 제1항 각 호의 거래의 위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6.>

제119조 삭제 <2011. 7. 6.>

제120조 삭제 <2011. 7. 6.>

제121조 삭제 <2011. 7. 6.>

제122조(주문 접수시간의 기록 등) ① 회원이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문서에 의한 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에, 전화등방법의 경우에는 주문표 또는 전산주문표에, 전자통신방법의 경우에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그 접수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문서에 의한 방법 또는 전화등방법으로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주문내용을 접수한 시간의 순서에 따라 회원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 ③ 회원은 제1항과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문의 접수 등에 관한 기록을 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 ④ 삭제 <2011. 7. 6.>

제123조(협의거래의 수탁)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제7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의거래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3. 4.>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른 협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 확인하여야 할 내용 등 협의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4.>

제124조(수탁의 거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이라 한다)을 증가시 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문개정 2009. 9. 23., 2011. 1. 26.>

- 3. 제154조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제154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서신설 2011. 1. 26.>
- 4.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156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나. 제156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② 회원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하는 경우 동일한 위탁자가 다른 투자중개업자에게 개설한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개정 2014. 8. 27.>
- ③ 회원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탁자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거래의 수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회원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에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 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5조(위탁자에 대한 거래내용의 통지)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② 회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간 거래의 실적이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월간거래내용 및 월말잔고현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하고, 반기 간 거래의 실적이 없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반기말잔고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③ 회원이 제1항의 거래내용, 제2항의 월간거래내용·월말잔고현황 및 반기말잔고현황을 위탁자가 지정한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로 우편 또는 전자통신방법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통지한 자는 그 통지내용을 주문표나 전산주문표에 기록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14. 8. 27.>

제2장 위탁증거금

제1절 통칙

- 제126조(정의) ① 이 장에서 "위탁금액"이란 위탁가격(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의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에 위탁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8. 27.>
- ② 이 장에서 "약정금액"이란 약정가격에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127조(기본예탁금) ① 회원이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 ②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매수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해당 미결제약정이 소멸된 후에도 제150조에 따른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 2019. 7. 10.>
 - 1.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 2.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거래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
 - 3.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 ④ 제1항에 따른 외화 및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제3항제2호에 따른 헤지전용계좌의 설정, 예탁자산의 범위, 거래한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017. 5. 2.>

- 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 2.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 3.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 4.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
- ② 대용증권의 가격(이하 "대용가격"이라 한다)의 산출방법과 산출시기, 대용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의 관리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9. 11., 2014. 8. 27.>
- 제129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대용증권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원이 질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권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2019. 8. 28.>
- 제129조의2(외화증권의 예탁 및 반환)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예탁받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회원 명의의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예탁하고,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2.]

- 제130조(대용증권·외화증권의 이용제한)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사전에 문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
- ② "위탁자는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회원이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위탁자가 회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2.>
- **제131조(외화증권의 혼합보관 등<개정 2019. 8. 28.>)** ① 회원은 외화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9. 8. 28.>
- ② 회원은 외화증권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9, 8, 28,>
- ③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을 예탁한 위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증권으로 교체하여야한다. <개정 2012. 12. 12.>

제2절 위탁증거금의 예탁

제132조(파생상품계좌별 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위탁증거금(이하 "사전위탁증거금"이라 한다)과 정규거래시 간의 종료 후에 예탁받는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3. 4.>
- ③ 제2항의 위탁증거금은 현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다만,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예탁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7. 6., 2012. 12. >
- ④ 제2항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은 당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 또는 다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1.1.26.>
- 제133조(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 및 관리) 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 중에서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 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사후위탁증 거금을 적용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이외의 위탁자는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 26., 2014. 8. 27.>
- ② 회원은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로 위탁자가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이하 "위험노출액한도"라 한다)을 사전에 설정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위험노출액한도는 예탁총액(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의 대용증권의 매도대금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 26., 2011. 7. 6., 2013. 7. 3.>

- ③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1, 26... 2014. 8, 27.>
- ④ 회원은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1. 26..>
- ⑤ 회원은 제1항의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 요건, 제2항의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제4항의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6., >
- ⑥ 회원은 제5항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6., >
- ⑦ 제5항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 및 그 밖에 사후위탁증거금의 적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7. 6.>
- 제134조(사전위탁증거금) ① 사전위탁증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주문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순위험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 1. 위탁받은 주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선물거래의 경우: 위탁금액에 위탁증거금률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나. 옵션거래의 매수의 경우: 위탁금액
 - 다. 옵션거래의 매도의 경우: 위탁수량에 거래승수 및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라.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 위탁수량에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
 - 2.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 3. 결제예정금액
 - 4. 삭제 <2011. 7. 6.>
- ② 제1항제1호가목의 위탁증거금률, 제1호라목의 계약당스프레드주문위탁증거금액, 제2호의 사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제3호의 결제예정금액, 사전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의 수준의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 그 밖에 사전위탁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23., 2011. 7. 6., 2012. 12. 12.>
- 제135조(사후위탁증거금) ① 사후위탁증거금은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9. 23., 2011. 12. 28.>
- ②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는 경우에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예탁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8. 27.>
- ③ 제1항의 사후순위험위탁증거금액, 제2항의 차익거래 및 헤지거래의 범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의 수준, 그 밖에 사후위탁증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23., 2011. 7. 6.>

제3절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 제136조(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① 회원은 위탁자의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외화 및 외화증권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 7. 6., 2012. 12. 12.>
- ② 제1항의 지급·충당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지급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23.>
- 제137조(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개정 2015. 4. 29.>) ① 회원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거나 예탁현금이 유지현금예탁필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23., 2011. 7. 6., 2013. 7. 3.>
-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받으려면 위탁자에게 추가예탁금액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은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거래일 12시까지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탁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 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
- ⑥ 제1항의 예탁총액, 유지위탁증거금액, 예탁현금, 유지현금예탁필요액, 추가예탁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6., 2013. 7. 3.>
- 제137조의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① 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위탁자의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한다.
- ②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 받으려면 위탁자에게 추가예탁금액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 후에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예탁총액, 장중 유지위탁증거금액, 추가예탁금액의 산출기준 및 방법, 추가예탁시한, 제3항에 따른 추가예탁의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29.]

- 제138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① 회원은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한 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그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
- 제139조(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위탁자의 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2. 12.>

제3장 회원과 위탁자간 결제

제1절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제140조(일일정산 및 정산가격)** ① 회원은 선물거래의 각 종목에 대하여 거래일마다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가격으로 위탁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3,,2025. 5. 2.>
- ② 제1항의 정산가격에 관하여는 제96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1조(당일차금의 수수) 회원과 위탁자는 당일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 제142조(갱신차금의 수수) 회원과 위탁자는 갱신차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차금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98조제1 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27.>
- 제143조(매도·매수 대등수량의 소멸)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직전 거래일의 미결제약정수량을 포함한다)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킨다. 다만,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5. 2.>
- 제144조(최종결제) ① 회원과 위탁자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거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최종결제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현금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③ 제1항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제2절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제145조(옵션대금의 수수) 회원과 위탁자는 옵션대금을 결제금액으로 수수하여야 한다.

- 제146조(매도·매수 대등수량의 소멸) 회원은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별로 동일한 종목의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직전 거래일의 미결제 약정수량을 포함한다)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킨다. 다만, 제1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5. 2.>
- **제147조(위탁자의 권리행사 신고**) ① 위탁자가 권리행사를 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까지 회원에게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로 본다. <개정 2013. 7. 3.>
- 제148조(권리행사결제) ① 회원과 위탁자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결제를 하여야 한다. <개 정 2013. 7. 3.>
- ② 제1항의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결제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 ③ 삭제 <2013. 7. 3.>

제3절 차감결제 및 결제시한 등

- 제149조(차감결제) ① 회원이 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은 수수일(제103조제4항의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의 차감액(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 현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7. 3.>
- ② 회원이 위탁자와 수수하는 기초자산은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각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이하 이 절에서 "차감결제기초자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③ 회원은 파생상품계좌를 두 개 이상 개설한 위탁자와 결제를 하는 경우 수수일 및 수수시한이 동일한 파생상품계좌 간에 현금을 차감하 거나 기초자산을 차감하여 수수한다. <개정 2014. 8.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수수시한은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로 한다.
 - 1. 당일차금 및 갱신차금의 경우: 수수일의 12시
 - 2. 옵션대금의 경우: 수수일의 12시
 - 3.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기초자산의 경우: 현금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수수일의 12시,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수수일의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 ⑤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 자산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 제150조(위탁자의 결제시한) ① 회원과 위탁자 간의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은 수수일의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는 제149조제4항제3호의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파생상품거래의 수수시한으로 한다.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수수일 또는 수수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7조제5항에 따라 결제불이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자에 대하여는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 제기초자산의 수수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

- 제151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원은 제105조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 제152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① 회원은 위탁자가 차감결제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위탁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결제금액 등에 대하여 연체기간 동안의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회원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위탁자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원이 부담한 손실 및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편 시장의 관리

- 제153조(유동성관리상품 및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 ① 거래소는 일정기간 거래가 부진하여 거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의 상품을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한다.
-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동성관리상품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거래부진이 지속되어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품을 상장폐지예고상품으로 지정한다.
- ③ 제1항의 유동성관리상품 및 제2항의 상장폐지예고상품의 지정기준, 지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54조(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수량(회원이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미결제약정을 자기계산으로 보유하거나 동일인 위탁자가 보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회원은 제114조 제3호의 위탁자 파악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수량 이내에서 위탁자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2015. 6. 24, 2015. 10. 21, 2016. 6. 8, 2017. 2. 8.>
 - 1.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량
 - 가. 코스피200(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200종목에 대하여 기준일인 1990년 1월 3일의 지수를 100포인트로 하여 거래 소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 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한다.
 -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2만계약. 다만, 결제이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1만계약으로 하다.
 - 나. 가목 이외의 주식상품거래의 경우: 가목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의 경제적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자산의 특성, 시장의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 다. 삭제 <2017. 2. 8.>
 - 라. 삭제 <2017. 2. 8.>
 - 2. 삭제 <2015. 6. 24.>
 - 3. 금선물거래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3천계약
 - 4. 돈육선물거래의 경우: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및 최근월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 5. 그 밖의 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을 말한다)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제1항제1호가목(2)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0. 6. 23., 2011. 1. 26.>

- ④ 제3항에 따라 차익거래 관련수량 또는 헤지거래 관련수량을 보유수량에서 제외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 내에 거래소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제출된 증빙서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6., 2014. 8. 27., 2020. 7. 22.>
 - 1.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의 경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한다.
 - 2. 위탁거래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한다.
- ⑤ 거래소는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호가 중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약정보유 제한수량을 초과시키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 ⑥ 제1항의 동일인의 범위, 제3항의 차익거래관련수량·헤지거래관련수량의 범위, 순미결제약정수량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55조(주식선물거래 등의 제한<개정 2017. 2. 8.>) ① 거래소는 기초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선물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및 주식옵션거래를 제한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8. 27.>
- ② 거래소는 해외지수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제10조제4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외주식선물거래의 기초자산이 제22조제1항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 ③ 거래소는 ETF가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ETF선물거래, ETF선물스프레드거래 및 ETF옵션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2.8.>
- 제156조(파생상품시스템을 가동할 수 없는 경우의 비상조치) ① 거래소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의 호가의 방법, 호가의 우선순위, 거래의 체결방법, 권리행사의 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한다.
- 제156조의2(과다호가의 접수제한 및 과다호가부담금) ① 거래소는 호가폭주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과다한 호가건수에 대한 과다호가부담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해당 위탁자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 ③ 제1항에 따른 과다호가의 접수제한, 제2항에 따른 과다호가부담금의 부과 대상·액수·방법 및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① 회원은 알고리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 ② 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 ③ 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 변경의 신고를 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 청할 수 있다.
 - 1.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 2. 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협의대량거래의 신청은 제외한다)
- ④ 제2항의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제3항의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방법 및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3.]

- 제156조의4(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등)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1. 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출 것
 - 2.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
 - 3.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②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은 사전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위탁자 또는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라고 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해서만 고속 알고리즘거래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 해당 회원이 설정한 전체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
 - 2. 위탁자가 해당 회원을 통하여 등록할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회원이 발견한 경우
 - 3. 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⑥ 거래소는 공익,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⑦ 제1항 및 제2항의 등록 또는 신고절차, 제3항의 계좌 신고방법, 제6항의 등록말소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7.]

- 제156조의5(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등) ①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를 위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위험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의 수행여부 확인 및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7.]
- 제156조의6(접속해제 시 호가취소) ① 회원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과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이하 "접속해제 호가취소"라 한다)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할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취소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 및 해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7.]

- 제157조(결제조건 등의 변경) ①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한 사유로 결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결제의 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8조(시장상황 등의 상시파악) 거래소는 이 규정에 따른 시장조치의 적시성·적정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 제159조(회원에 대한 조치)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의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0조(회원의 보고 및 자료제출) 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제65조에 따른 호가입력내용과 관련된 회원파생상품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제160조의2(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① 삭제 <2011. 7. 6.>

제161조(회원에 대한 통지사항) 거래소가 시장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는 사항, 그 밖에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편 보칙

제162조(파생상품담당자) ① 삭제 <2012. 12. 12.>

제163조(파생상품책임자) ① 삭제 <2012. 12. 12.>

제164조(파생상품담당자의 등록취소) ① 삭제 <2012. 12. 12.>

- 제165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배제) ① 거래소는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 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출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산가격,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을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회원 및 위탁자는 거래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정산가격, 최종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을 재산출하거나 코스피 200 등을 잘못 산출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21.>
- 제166조(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 ① 매매전문회원은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에 에게 인계할 수 있다.
- ② 위탁자는 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을 체결한 회원에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려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원과 인계받는 회원 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8.27.>
- ④ 제3항의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체결가격, 미결제약정과 관련한 재산의 이전방법, 그 밖에 미결제약정의 인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제166조의2(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의 인수) ① 플렉스선물거래에 있어서 위탁증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결제불이행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제138조 및 제152조에 따라 해당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은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자기거래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 ② 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4.]

- 제167조(위탁수수료의 징수)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문에 대하여 거래의 성립,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 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위탁수수료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 징수방법 및 징수시기 등(이하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제2항의 위탁수수료징수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표하고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7.>

제168조(실비의 징수) 회원은 위탁수수료 이외에 월간거래내용, 월말잔고현황 및 반기말잔고현황 등의 통지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7.>

제169조(파생상품계좌의 기록) 회원은 위탁증거금, 결제, 그 밖에 거래와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수하는 현금, 기초자산,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에 관한 사항을 파생상품계좌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

제170조(결제조건 등의 변경통지) 회원은 파생상품거래약관, 결제조건, 위탁증거금률 및 위탁증거금액, 그 밖에 위탁자의 권리·의무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위탁자에게 통지하고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7거래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71조(대리인의 제한) 회원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회원과 파생상품계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위탁자의 대리인이 되지 못한다.

제171조의2(의견수렴) 이 규정(세칙을 포함한다)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 4. 29.]

제17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95호, 2009. 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금리상품거래,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 거래의 기본예탁금 예탁에 대한 본칙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폐지)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 폐지 관련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종전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에 따라 행하여진 선물거래 및 옵션 거래에 대한 미결제약정, 이 규정 시행일 직전 거래일에 산출되는 추가증거금 및 결제, 그 밖에 수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기본예탁금의 예탁의 특례) 금리상품거래, 통화상품거래 및 금선물거래에 대한 기본예탁금 예탁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의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호, 2009.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원사의 파생상품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화선물 거래기간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거래가 개시되는 통화선물거래의 결제월종목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화선물 거래개시의 특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2개 결제월의 통화선물거래를 새로이 개시한다.

제4조(통화선물 미결제약정의 특례) 이 규정 시행일에는 통화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수량에 5를 곱하는 방법으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조정한다.

제5조(통화선물 갱신차금 산출의 특례)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에는 통화선물거래의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에 5를 곱한 수량을 전일의 미결제약정수량으로 하여 갱신차금을 산출한다.

부칙 <제486호, 2009. 3. 18.>

이 규정은 회원의 파생상품시스템 프로그램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호, 2009. 9. 23.>

이 규정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 2009. 12. 29.>

이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동성공급과 관련한 제105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과 제105조의3의 개 정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 2010. 6. 23.>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6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154조의 개정규정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미니금선물 거래개시일 및 거래기간의 특례) 본칙 제9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미니금선물의 거래개시일에는 세칙이 정하는 7개 결제월의 미니금선물거래를 개시한다.
- 제3조(금선물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의 특례) 본칙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의 전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이 존재하는 금선물거래 결제월종목의 최종거래일 및 최종결제일은 종전 규정 제59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636호, 2010. 9.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칙 제38조부터 제43조 및 제10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회원사의 파생상품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제한의 특례) 본칙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초자산이 동일한 10년국채선물거래의 종목에도 불구하고 거래단위, 거래승수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에서 제외한다.
- 제3조(3년국채선물거래 및 5년국채선물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칙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이하 같다)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이 존재하는 3년국채선물거래 및 5년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종목은 각각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3년국채선물거래 및 5년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종목은 본 칙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제4조(10년국채선물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본칙 제38조제2항·제4항, 제39조제2항(거래기간에 한한다),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이 존재하는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종목은 각각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규정 시행일 전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미결제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종목은 본칙 제38조제2항·제 4항,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③ 10년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 수는 본칙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전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종거래일이 가장 나중에 도래하는 결제월종목의 미결제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82호, 2011. 1. 2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제5조, 제111조, 제122조, 제124조, 제132조, 제133조 및 제154조는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통안증권선물 최종거래일의 특례) 본칙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통안증권선물거래의 각 결제월종목의 미결제약정이 없는 날을 당해 결제월의 최종거래일로 한다.
- 제3조(통안증권선물 거래개시의 특례) 본칙 제9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의한 최종거래일 이후에는 통안증권선물의 새로운 결제월을 상장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742호, 2011.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65조, 제88조, 제110조의2, 제116조, 제118조 내지 제122 조, 제124조제1항제2호, 제132조, 제134조 내지 제137조 및 제160조의2의 개정 규정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옵션매수전용계좌 폐지에 관한 특례) 이 규정의 시행일의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옵션매수전용계좌는 사전위탁증 거금일반계좌로 전화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00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가지수옵션 거래승수 변경에 대한 적용례) 개정규정 제15조제3항은 세칙이 정하는 날 이후에 새로이 거래가 개시되는 주가지수 옵션거래의 결제월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0호, 2012. 12. 12.>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4일에 시행한다. 다만, 제154조, 제162조부터 제164조를 제외한 규정은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1호, 2013.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화옵션거래 최종거래일의 특례) 본칙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전의 통화옵션거래 4개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은 부칙 제 1조에 따라 세칙이 정하는 날의 전일(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제3조(통화옵션거래 거래개시 및 거래기간의 특례) 본칙 제9조 및 제50조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에 따라 세칙이 정하는 날에 세칙에서 정하는 4개 결제월의 통화옵션거래를 개시한다.

부칙(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51호, 2013. 9.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② <생 략>

③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의2.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부칙 <제1028호, 2014. 6. 3.>

이 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2, 제74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2조의8, 제103조 및 제149조의 개정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 2014. 8. 27.>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1항제7호, 제10조제3호, 제12조제1항 제3호, 제2편제2장제3절(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 제2편제2장제4절(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편제2장제5절(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78조제1항, 제3편제4장(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 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7호, 2015. 2. 11.>

이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호, 2015. 4. 29.>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호, 2015. 6. 24.>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9호, 2015, 10, 21.>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1278호, 2015. 12. 30.>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1329호, 2016. 6. 8.>

- 이 규정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4조제1항(단서 중 해외지수선물시장 및 해외주식선물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 지수선물시장 및 해외주식선물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6년 8월 1일
 - 2.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해외주식선물거래 및 해외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에 관한 개정규정: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

부칙 <제1393호, 2016. 12. 28.>

이 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호, 2017. 2. 8.>

이 규정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ETF선물시장 및 ETF옵션시장에 한한다)·제5호(ETF선물스프레드시장에 한한다), 제2편제2장제6절(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 제2편제2장제7절(제37조의6, 제37조의7, 제37조의8 및 제37조의9), 제76조제1항제8호·제9호, 제154조제1항제1호가목(1)세목·(2)세목, 제155조의 개정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호, 2017. 5. 2.>

이 규정은 201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 2018. 12. 5.>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호, 2019. 7. 10.>

이 규정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해당 호 중 "제63조 및 제63조의3"의 개정 규정에 한정한다), 제3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89조 및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7호, 2019. 8. 28.>

이 규정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6호, 2020. 4. 29.>

이 규정은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호, 2020. 7. 22.>

이 규정은 2020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호, 2021. 11. 24.>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호, 2022.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준비 및 특례) ① 거래소는 이 규정 시행 1개월 전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신청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제124조제1항제4호 및 제156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회원은 규정 시행 후 3개월까지는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138호, 2023. 7. 5.>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7호, 2025. 5. 2.>

이 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